

서울지역본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내선번호 2번→3번)를 통해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모집공고문을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6.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모집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되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성별분리) 층별로 남성/여성을 분리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일부 주택의 경우 주택매입 시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일 수 있습니다.
- (기숙사 운영규정 준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기숙사 부족 보안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기숙사로 공급하는 것으로 질서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개별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규정 위반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 하단의 '청년기숙사 운영규정' 참조)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냉장고, 에어컨, 책상, 세탁기, 쿡탑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치된 가전 및 가구의 처분은 불가하며 분실·멸실·파손 시 LH에 통보하고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주택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점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모집일정

모집 공고	⇒	신청 (PC, 모바일)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	자격검증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	입주
6.22(목)		7.3(월) ~ 7.5(수)		7.7(금)		7.10(월) ~ 7.12(수)		7.13(목) ~ 8.24(목)		8.25(금)		별도 안내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48호

- 주택군,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임대조건	• 시중 시세 4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60만원)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관리업무(공공부분청소, 공과금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중전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2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2023.06.22)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출생일 1983.06.23~2004.06.22)**인 사람
- * ②은 3순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 외국인인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입주순위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대학원생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대학생·대학원생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하는 대학생·대학원생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대학생·대학원생 및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024,661원, (2인) 5,505,914원, (3인) 6,718,198원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4,024,661원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I-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 기입)

■ 소득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함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구분	산정방법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소득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전산추첨](#)

※ 대학교 및 대학원 인정 기준

• 대학교 인정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4호, 6호, 7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대학원대학, 해외대학 제외

• 대학원 인정기준

「고등교육법」제29조2 및 제30조에 따른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대학원대학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 중인 학교가 하단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내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공급단계	일정	내용
청약신청	7.3(월) 10:00 ~ 7.5(수) 16:00	- 기숙사형 청년주택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센터)로 신청 가능합니다.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인터넷청약→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청 홈택스에서 소득 조회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마감일(07.05(수))은 마감시간이 오후 4시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7.7(금) (17:00이후)	서류제출대상자는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서류제출대상자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자 서류접수	7.10(월) ~ 7.12(수) (10:00~16:00)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서비스부 * 07.12.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본인+부모(또는 본인)의 소득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예비자 순번 발표	8.25(금) (17:00이후)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결과조회-당첨/낙찰자조회에 게시 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개별 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후 지정 가능한 주택과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LH 주거지원종합센터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및 방법안내

- 공고일(23.06.22)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3.07.07(금) 17:00 이후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PC) LH청약센터→상단 『인터넷청약』 클릭→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임대주택)』
 - (모바일) “LH청약센터” 앱(App)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

■ 서류제출 기간 : 2023.07.10(월) ~ 2023.07.12(수)

■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수신처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담당자” 앞
- 신청기간 마감일(23.07.12)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되며, 미제출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소득검증대상 전원(본인과 부모 또는 본인)이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p16) 첨부

■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이혼 시에 한하여 제출 * (주의)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추가서류 제출 불필요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 ¹⁾ 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²⁾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행정복지센터
차상위계층	• 본인 또는 부모 ³⁾ 의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거주 시에도 신청 가능	행정복지센터
대학생· 대학원생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첨부양식)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첨부양식) 제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해당교육기관 신청자 작성 양식(p19) 첨부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

5 기타 유의사항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인터넷 청약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 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입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신청일자별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주택개방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접수기간 및 계약체결 전 지역본부, 주거지원종합센터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 주택개방일정은 주택내역 또는 별도 공지사항으로 안내 예정
동호 지정 계약체결	- 주택 건물별 호수 지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약 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하는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어 바랍니다. - 전자계약 시 계약일정 및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LH에서 송부하는 전자계약 체결 안내문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관련 (기금대출)	-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 시 상황이 필요 없으며,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은 매입임대주택 입주 전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조건	첨부된 주택내역의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자격 등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숙사형 청년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병역의무를 마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한 경우 다른 공급대상지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기타사항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쿨탑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 예정입니다.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비치된 가구 및 가전제품의 분실, 파손, 훼손, 멸실, 원형변경이 있을 시 LH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동(棟) 단위로 매입한 주택 내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 신청인은 입주 후 지역편의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지역소요, 주택특성, 입지여건 등에 따라 지역편의시설의 활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하며, 임대료 납부고지서 수령방법은 모바일 또는 이메일 고지서(이발링) 수령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11호, 2023.5.10.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청년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임차권의 양도, 전대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인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LH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잔금완납 전 키 불출은 불가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전 '기계식주차장 사용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차장 운영·관리에 따른 관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6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내선번호 2번→3번)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구분	주소	연락처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061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1층 주거복지서비스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담당자 앞	☎ 1600-1004 (내선번호 2번→3번)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매입합니다.

문의사항	LH 콜센터 1600-1004(내선번호 2번→3번)
인 터 넷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apply.lh.or.kr)

2023. 06. 22.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 LH 청년기숙사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LH가 직접 공급 및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이하 “청년 기숙사”)의 입주자가 입주 시 서약한 바에 따라 입주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숙사운영위원회) ① 기숙사운영위원회는 관할 LH주거지원종합센터장을 위원장, 본사 매입전세 임대사업처 1인, 관할 주거지원종합센터 1인, 관할 주거자산관리부 1인, 관할 광역관리사무소장, 해당 청년기숙사 관리소장 및 외부 기숙사전문가 2인 등 총 7인 이하로 구성하고, 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입사자의 의무위반 등 운영관리와 관련된 사안의 발생 시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② 기숙사운영위원회는 기숙사 입사자의 의무위반 등 운영관리와 관련된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조치 결과를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긴급한 경우 서면의 방법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3조 (입주) 입주가 승인된 자(이하 “입사자”라 한다)는 생활관 입주절차에 따라 신상명세서 및 서약서를 기숙사형청년주택 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통신) 일반우편물은 수취함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하고, 특수우편물(등기, 소포, 택배)은 관리실에서 수취인이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한다.

제5조 (주택 배정) 주택 동호는 주택소제지 관할 LH 주거지원종합센터장이 결정하고, 소장은 배정내역 동호에 따라 입사자가 입주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하며, 배정된 주택 동호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6조 (외부인 출입제한) ① 외부인을 생활관 내에 대동할 수 없다.

② 외부인의 생활관 출입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출입대장 기재 후 출입증을 발부받아 허용한다.

제7조 (변상) 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 (인원파악) 정기 또는 수시로 인원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커뮤니티 지원) 입사자 5인 이상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모임을 실시한 후, 지출한 경비를 매월 1인당 5천원까지 커뮤니티 활성화 비용신청서와 활동사진 및 지출증빙을 첨부하여 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공고문 게시 및 방송) ① 소장이 게시한 공고문은 모든 입사자가 반드시 읽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공고문 내용은 게시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주지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퇴거승인) ① LH와 계약한 계약기간(2년) 내 학기 중 휴학자 또는 자진퇴거, 방학 등으로 인한 귀향, 군복무 등 퇴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계약해지신청서(소정양식)를 제출하여 소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② 퇴거 시에는 출입카드·열쇠 등 기타 지급품을 반환한다.

제12조 (입사자 준수 의무) ① 모든 입사자는 LH 청년기숙사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생활관 및 부속시설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 (통보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생활관 또는 부속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
2. 화재, 풍수해, 도난, 긴급환자 등 이변이 발생하였을 때
3. 생활관내 또는 부근에 전염병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4. 기타 이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제14조 (금지사항) 입주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사항 위반행위가 계약해지사유 또는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계약 및 위반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권의 양도, 전대, 외부인의 숙박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생활관 시설 내에서 타인에게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의 행사
3. 생활관 및 그 부속시설의 구조·위치변경 등 원상을 훼손하는 행위
4. 생활관 시설 내에서 위험물을 사용하는 행위
5. 애완동물의 사육과 영리목적의 상행위(다만, LH가 공급하는 상가에서 영위되는 상행위는 예외임)

제15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입주자가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서면훈계, 서면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서약서 작성 의무) 청년 기숙사 입사 시에 본 규정을 숙지하였음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한다.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 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택의 범위

- ①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②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판단 기준일

- ①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②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의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 전)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합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소득 산정방법

- 소득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소득자산점 중대상 가구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 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 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 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물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물부 농업직불금
사업 소득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구분	항목	소득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 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임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다. 수집 및 이용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임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안내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제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제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제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임대공급 대행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하는 카드사, 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임대공급 대행기관	고객상담 및 계약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가입은행,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등), 임대료 결제(지로 자동이체)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주택도시자금 대출정보 보유기관	주택도시자금 대출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 안내를 받았습니다.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2023.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귀하

복학(입학) 예정자의 증명서류 제출 각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현재 휴학 중(입학 전)이나 다음 학기 복학(입학)예정자로서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대상 중 "대학생(대학원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직후 학기에 복학(입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 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학기에 복학(입학)하고 복학(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3년 월 일

확인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귀하